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09시 17분

지방세 상담 챗봇

인터넷지방세

지방세 질문과 답변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다자녀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정책

2020.12.19 조회수 504 등록자 유기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정책 답변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이준욱 작성일 2020.12.21 11:3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량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1) 감면기한: 2021.12.31.까지 (※ 이 감면기한의 연장여부는 법개정에 따름)

2) 감면대상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18세 미만: 2020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002년 현재일 다음날 이후 출생.

예시. 현재일이 2020.12.21. 이라면, 2002.12.22.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감면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단, 차량의 승차정원이 7~10명 이외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상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을 모두 포함하며, 산출된 차량 취득세 200만원까지 전액 감면되며, 차량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되면 차량 취득세의 85%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부과함.

※ 차량 취득세만 감면되며, 자동차세는 부과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정과 차량취득등록세담당자(061-270-425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목록

이전글
지방소득세 환급

다음글
자동차세 연납신청

MokPo - Si
Web Contents

